

### 2020년 발생한 직원의 인정이자계산분은 1월 급여에 반영함

**Q** A직원 장기대여금 백만원 있음.  
 2019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함.  
 2020년 1월 1일 부로 1년간 계약직으로 입사함.  
 장기대여금 100만원 2020년 1월 10일 회사에 입금함.  
 위와 같을 경우 12월분 급여 계산시 백만원 대여금에 대한 12월분 인정이자 계산하여 급여 계산 하였습니다. 1월10일 대여금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10일간의 인정이자부분을 계산하여 급여신고 하여야 하는데, 이 때 계약직으로 입사한 2020년 1월분 급여에 반영해도 되는지, 정년퇴직시점인 2019년 12월 31일에 미수이자 처리하고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인정이자부분 반영하여 총급여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2020년 10일간의 인정이자는 귀사의 의견대로 1월분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금융상품가입시점 지급한 선취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반영함

**Q** 은행에서 1억짜리 상품을 가입했고, 바로 선취수수료로 천만원을 떼고 잔액이 9천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기일이 되어서 정산을 했고 총 정산을 1억 2천을 받았어요.  
 처음에 가입할때 처리를  
 수수료 천만원, 단기매매 9천 / 보통예금 1억  
 이렇게 처리하면 실제로 제가 가입한 상품은 1억인데 장부에는 9천만원만 표기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기일 정산은 6개월후에 정산되어 같은 해에 처리가 끝났습니다.

**A** 가입시점에 선취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수수료로 반영하면 되며, 만기시 발생한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가입시점			
차) 단기매매증권	9천	대) 보통예금	1억
지급수수료	1천		
만기시점			
차) 보통예금	1억2천	대) 단기매매증권	9천
		이자수익	3천

## 해외 자회사 직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부담시 본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Q** 100% 투자한 해외 자회사 주재원의 급여를 발령후 183일 전까지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발령을 내고 얼마후에 해당 국가의 노동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질문은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183일 전까지 본사에서 급여를 지원할 수있는지 여부입니다.

**A** 해외 자회사로 발령이 난 직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지급은 할 수 있으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급여지원 자체는 가능하나 본사의 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발령이후의 급여에 대해서는 해외 자회사에서 지급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함

**Q**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법인으로 보면 되는지요? 재단법인과 거래를 하려는데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어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A**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신들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이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사채무 등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법률적으로 지급의무 사라지므로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함

**Q** 10년이상 장기미지급 채무건에 대해서 잡이익 처리해도 되는지요? 현재 해당업체의 세무정보조회시 휴업중이고, 생산활동이 없습니다.

**A** 장기미지급의 경우 민법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률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지므로 해당 시점에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경과되면 지급의무가 없어지므로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합니다.